

육아정책 소식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제고 위한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회계시스템 구축

교육부는 2017년 2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2017년 2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단, 개별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희망하는 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유아들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3~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에 확대하였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회계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하여 세입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하여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개정된 재무회계 규칙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17년 2월 25일) 및 시도담당자 연수(17년 2월 28일)를 실시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적용할 예정이다.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는 2017년 4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포천에서 발생한 민법 상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한 **입양 전 부모교육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해 왔다. 또한 양 기관은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실시되는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통해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효**

과성 및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민법 상 입양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 비교 〉

근거	대상	절차	부모 교육
민법	아동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입양	미 실시 ※ 일부 법원은 재량 실시
입양특례법	보호대상 아동	친생부모의 동의 및 입양기관의 가정조사 등을 거쳐 법원허가로 입양	입양 전 8시간 교육

※ 민법 상 입양은 재혼가정 입양 또는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 해당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1) 입양의 법률적 이해 2) 자녀의 발달과 심리 3)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부모·감정 코칭)을 교육하며,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법원 행정처는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 입양의 법률적 효과,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